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안 제42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1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화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생 략) <신 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화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연 락 처	(044) 204- 7591